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3023
------	------

2025. 9. 5.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년 8월 11일, 김길영 의원

나. 회부일자 : 2025년 8월 14일

다. 상정결과 : 【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】

-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(2025.9.4.)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수정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관광체육국장 구종원)

1. 제안이유

-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,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및 육성하고자 지정된 스포츠데이에 시립 체육시설 입장료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시민들에게 운동을 권장하고자 함.

- 시민이 자발적이고 일상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, 현대인의 운동 부족과 만성질환 증가 문제를 예방·해소하고자 함.
- 운동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 생활체육 저변을 넓혀 시민의 삶의 질 향상, 의료비 절감 및 건강 수명 연장을 기대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이 스포츠데이의 안전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설별 안전 관리, 운영요원 배치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수립·시행할 수 있게 함
- 나. 시장이 스포츠데일로 지정한 날의 시립체육시설 이용료 및 전용 사용료의 100의 50을 감액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스포츠기본법」, 「국민체육진흥법」, 「생활체육진흥법」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강옥심)

(1) 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안은 「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」 제22조의2¹⁾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데이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시립체육시설의 안전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, 스포츠데이에 시립체육시설의 입장료·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.

(2) 스포츠데이 운영 현황

- 지난 7월 14일, 「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」 제22조의2 규정이 신설되면서 시민의 체육활동 증진 등을 위한 스포츠데이의 지정·운영 근거가 마련되었음.
- 그러나, 서울시는 아직까지 스포츠데이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며, 앞으로 스포츠데이가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실시될지는 미지수임.
- 현재 전국에서 스포츠데이를 실시 중인 지자체는 경기도 화성시 1곳으로, 2023년 3월 「화성시 스포츠데이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정을 계기로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스포츠데이가 시행되고 있음.

1) 제22조의2(스포츠데이 지정 및 운영) ① 시장은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체육 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스포츠데이를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데이에 「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시가 설치·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,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5.7.14.]

- 다만, 실제로 화성시에서 스포츠데이와 관련하여 추진 중인 사업은 특정 날짜(매월 첫째 주 토요일)와는 무관한 상시 지원 사업에 가까워서 적절한 스포츠데이 운영 사례로서 참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임.

< 화성시 스포츠데이 사업 개요 >

구분	세부사업	내용
보는 DAY	스포츠 스탬프투어	화성FC 및 IBK배구 관람 시 스포츠 포인트 지급 또는 기부
배우는 DAY	직장운동경기부 유소년 스포츠교실	직장운동부 재능기부로 유소년 스포츠교실 운영
	생활체육교실	찾아가는 생활체육 교실 및 장애인 종목별 생활체육 교실 운영
운동하는 DAY	쓰리GO	걷기, 등산, 자전거 종목 등 구간 목표 달성 시 포인트 지급 또는 기부
	동호회 활동비 지원 사업	관내 생활체육 등록 동호회에 공통 운영물품 및 시설사용료 지원

- 특히, 「화성시 스포츠데이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7조는 동 개정안과 유사하게 체육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 면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, 실제로는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.

(3) 개정안의 타당성

① 스포츠데이 시행을 위한 안전 조치(안 제4조의2제3항)

- 개정안은 체육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 현행 제4조의2에 제3항을 신설함으로써, 스포츠데이를 실시할 경우 보다 적극적인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< 신·구조문대비표 >

현 행	개 정 안
제4조의2(체육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 등) ① · 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4조의2(체육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시장은 「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」 제2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데이의 안전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, 시설별 안전관리·운영 요원 배치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○ 스포츠데이가 본격적으로 지정·운영되면 해당 기간에 시립체육 시설에 인구가 밀집되는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.

② 입장료 및 사용료의 감면(안 제9조 및 제10조)

○ 동 개정안은 스포츠데이에 시립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그 범위와 규모를 규정하는 내용임.

< 신·구조문대비표(안 제9조) >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입장료) ①·② (생 략)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장료를 감액할 수 있다. 1. 2. (생 략) <u><신 설></u> 4. 5. (생 략)	제9조(입장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1. 2. (현행과 같음) 3. 시장이 스포츠데일로 지정한 날의 시립체육 시설 이용자: 100분의 50 감액. 다만,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의 경기장은 제외한다. 4. 5. (현행과 같음)

< 신·구조문대비표(안 제10조) 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별표 2 제1호의 개인연습사용료 감면.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.</p> <p>가. ~ 라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바. (생략)</p> <p>2.·3. (생략)</p> <p>4. <u>관내 초·중·고 학교운동부 경기 및 훈련의 경우 별표 3의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 감액</u></p> <p>5. (생략)</p>	<p>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.</p> <p>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마. 시장이 스포츠데일로 지정한 날의 시립 체육시설 이용자: 100분의 50 감액. 다만,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의 경기장은 제외한다.</u></p> <p>바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별표 3의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 감액</u> 가. <u>관내 초·중·고 학교운동부 경기 및 훈련</u> 나. <u>시장이 지정한 스포츠데이 관련 경기·행사. 다만,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의 경기장은 제외한다.</u>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

- 지방자치단체는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²⁾에 따라,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경 사유를 조례로 정할 수 있음.

2)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

제5조(전문체육시설)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

제6조(생활체육시설)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

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4조의2(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)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~ 6. (생략)
7.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

- 구체적으로는, 스포츠데이에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및 사용료(개인 연습·전용)를 50% 감액할 수 있도록 하되,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이 있는 경기장³⁾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.
- 감면 시설에서 시 연고 프로구단이 있는 경기장을 제외하는 이유는, 스포츠데이에 감액 혜택을 받고자 하는 일반 시민이 시설 개방을 요구하여 연고 프로구단의 경기장 사용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집행기관의 의견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.
- 다만, 각 개정 조문의 단서 중 “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의 경기장” 문구는 시립체육시설이 프로구단의 소유인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어 “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이 있는 경기장”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함.(11-12p 표 참조)
- 다음으로, 동 개정안 시행에 따른 세입 감소 추계치를 살펴보면, 서울시 연고 프로구단이 있는 경기장을 제외한 시립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를 연 12일⁴⁾·50% 감액할 경우, 연간 3천3백만원 (△1.6%)의 세입 감소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.

< 시설별 세부 추계 내역(시의회 재정분석관) >

시설명	구분	2024년 연간 수입액(A)	1일 평균 수입액(B)	감면비율(C)	연간 스포츠데이(D)	연평균 수입감소액	
총 합		1,996,178	5,469	50%	12일	32,814	
잠실종합 운동장	소계	591,117	1,619	50%	12일	9,717	
	입장료	0	0			0	
	사용료	개인연습	348,693			955	5,732
		전용	242,424			664	3,985

3) 잠실야구장, 잠실실내체육관, 서남권돔구장 내 야구장,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주경기장, 목동운동장 내 주경기장, 장충체육관 내 주체육관

4) 화성시와 동일하게 스포츠데이가 월 1회(연 12회) 실시될 경우를 가정함.

목동 운동장	소계		256,910	704	50%	12일	4,223
	입장료		3,725	10			61
	사용료	개인연습	10,108	28			166
		전용	243,077	666			3,996
서울 월드컵 경기장	소계		577,863	1,583	50%	12일	9,499
	입장료		24,050	66			395
	사용료	개인연습	0	0			0
		전용	553,813	1,517			9,104
고척 스카이돔	소계		412,734	1,131	50%	12일	6,785
	입장료		0	0			0
	사용료	개인연습	126,166	346			2,074
		전용	286,568	785			4,711
장충 체육관	소계		157,554	432	50%	12일	2,590
	입장료		16,567	45			272
	사용료	개인연습	8,833	24			145
		전용	132,154	362			2,172

※ 연평균 수입감소액 = $\{(A \div 365) \times C\} \times D$

※ 호창운동장 및 구의·신월야구공원은 잠실 및 목동에 포함하여 추정

- 따라서 동 개정안의 시행이 서울시 세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, 시민의 체육활동을 정기적으로 독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.
- 다만, 아직 스포츠데이의 실시 주기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서울시의 운영 방침에 따라 추계치가 크게 변동될 가능성도 있음.
- 감면율 규모의 적정성에 관하여 살펴보면, 100분의 50이라는 감면율은 사회적 공로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에 준하거나 이를 넘어서는 수준으로,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음.

< 현행 조례의 입장료·사용료 감면 비율 >

구분	감면율	조건
입장료	면제	1. 시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경우 2. 경기 또는 행사 등의 주최 측 담당 임직원·지도요원·출전선수 등이 경기·행사의 개최를 위하여 입장하는 경우 3. 신문사·방송사·통신사 등의 출입기자 등이 경기·행사의 중계방송 또는 취재 등을 위하여 입장하는 경우 4. 그 밖에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을 소지하거나 공익상 또는 시책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.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동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 6.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임산부 본인
	100분의 50	1. 18세 이하인 자 2. 65세 이상인 자 3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5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 6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7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8.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대군인
	100분의 30	1. 행사·경기의 관람이 아닌 관광 등을 목적으로 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입장 이용자
개인사용료 (연습 사용료)	면제	1. 서울특별시육상연맹 및 서울특별시장애인육상연맹에 등록된 선수가 훈련을 목적으로 육상장(트랙)을 이용하는 경우
	100분의 50	1. 18세 이하인 자(제7조제4항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하여 징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 2. 65세 이상인 자 3.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동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 4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5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6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 7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8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9.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임산부 본인 10. 체육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소음, 교통체증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(100분의 5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)

구분	감면율	조건
개인사용료 (연습 사용료)	100분의 30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10명 이상의 단체입장 이용자(수영장, 테니스장 제외) 2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 3. 「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」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200시간 초과한 자 4.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대군인
전용사용료	면제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시가 주최하는 경기·행사 2. 「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훈련 3.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을 위한 시 대표팀 선수의 훈련 4. 시의 승인을 받아 서울특별시체육회,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
	100분의 50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관내 초·중·고 학교운동부 경기 및 훈련
	100분의 30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국위선양이나 체육진흥을 위한 경기·행사 2. 민속제나 고유 민속문화의 보급·발전을 위한 행사 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경기·행사 4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사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경기·행사 5. 65세 이상의 노인, 18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, 장애인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·행사 6. 지역의 직능단체 등 지역주민단체(해당 시설 자치구 소재 단체로 한정)가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마을축제, 문화행사 등 공공의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7. 그 밖에 공익 또는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·행사

○ 또한, 향후 서울시의 스포츠데이 운영 방침에 따라 소요 비용 등이 정확히 산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, 입장료 및 사용료의 감면율을 100분의 30로 조정할 것을 제안함.

< 안 제9조 및 제10조의 수정 의견 >

현행	개정안	수정 의견
<p>제9조(입장료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장료를 감액할 수 있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4. 5. (생략)</p>	<p>제9조(입장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시장이 스포츠데이로 지정한 날의 시립체육시설 이용자: 100분의 50 감액. 다만,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의 경기장은 제외한다.</u></p> <p>4. 5.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9조(입장료) ①·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2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3. <u>시장이 스포츠데이로 지정한 날의 시립체육시설 이용자: 100분의 30 감액. 다만,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이 있는 경기장은 제외한다.</u></p> <p>4. 5.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별표 2 제1호의 개인연습 사용료 감면.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.</p> <p>가. ~ 라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</p> <p>마. <u>시장이 스포츠데이로 지정한 날의 시립체육시설 이용자: 100분의 50 감액. 다만,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의 경기장은 제외한다.</u></p>	<p>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가. ~ 라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마. <u>시장이 스포츠데이로 지정한 날의 시립체육시설 이용자: 100분의 30 감액. 다만,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이 있는 경기장은 제외한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의견
바. (생략) 2. 3. (생략) 4. <u>관내 초·중·고 학교운동부 경기 및 훈련의 경우 별표 3의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 감액</u> 5. 별표 3의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 감액 가. ~ 바. (생략) 사. (생략)	바. (현행과 같음) 2. 3. (현행과 같음) 4. 별표 3의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 감액 가. <u>관내 초·중·고 학교운동부 경기 및 훈련</u> 나. <u>시장이 지정한 스포츠데이 관련 경기·행사.</u> <u>다만,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의 경기장은 제외한다.</u> 5. ----- ----- 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 <u><신설></u> 사. (현행과 같음)	바. (개정안과 같음) 2. 3. (개정안과 같음) 4. <u>관내 초·중·고 학교운동부 경기 및 훈련의 경우 별표 3의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 감액</u> 5. ----- ----- 가. ~ 바. (개정안과 같음) <u>사. 시장이 지정한 스포츠데이 관련 경기·행사.</u> <u>다만,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이 있는 경기장은 제외한다.</u> <u>아. (개정안 사목과 같음)</u>

- 한편, 개정안은 부칙 안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데, 부칙 안 제2조는 목동실내빙상장의 경우에만 스포츠데이 감면 규정을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음.
- 이는 목동실내빙상장의 2025년의 예상 수입이 반영된 위탁비정산이 이미 완료되어 개정 규정을 2026년부터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임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없음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수정안가결 (재적위원 10명, 참석위원 9명, 참석위원 전원 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023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5. 9. 4.
발 의 자 : 문화체육관광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개정안에서 스포츠데이에 적용하고자 하는 입장료·사용료 감면율(100분의 50)은 국가유공자·의사상자 등 사회적 공로자 및 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의 감면율에 준하거나 그보다 높은 수준으로, 시민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, 100분의 30으로 감면율 조정을 제안함.

2. 수정주요내용

- 가. 스포츠데이의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감면율을 100분의 30으로 조정함 (안 제9조).
- 나. 스포츠데이의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100분의 30으로 조정함 (안 제10조).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9조제3항제3호 본문 중 “100분의 50”을 “100분의 30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단서 중 “프로구단의”을 “프로구단이 있는”으로 한다.

안 제10조제1호마목 본문 중 “100분의 50”을 “100분의 30”으로 하고, 같은 목 단서 중 “프로구단의”을 “프로구단이 있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별표 3”을 “관내 초·중·고 학교운동부 경기 및 훈련의 경우 별표 3”으로 하고,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5호사목을 아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사. 시장이 지정한 스포츠데이 관련 경기·행사. 다만,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이 있는 경기장은 제외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9조(입장료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장료를 감액할 수 있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4. 5. (생략)</p>	<p>제9조(입장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시장이 스포츠데이로 지정한 날의 시립체육 시설 이용자: 100분의 50 감액. 다만,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 구단의 경기장은 제외한다.</u></p> <p>4. 5.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9조(입장료) ①·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2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3. <u>시장이 스포츠데이로 지정한 날의 시립체육 시설 이용자: 100분의 30 감액. 다만,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 구단이 있는 경기장은 제외한다.</u></p> <p>4. 5.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별표 2 제1호의 개인 연습사용료 감면.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.</p>	<p>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	<p>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가. ~ 라. (생략)

<신설>

바. (생략)

2.·3. (생략)

4. 관내 초·중·고 학교운동부 경기 및 훈련의 경우 별표 3의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 감액

5. 별표 3의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 감액
가. ~ 바. (생략)

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
마. 시장이 스포츠 데이로 지정한 날의 시립체육시설 이용자: 100분의 50 감액. 다만,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의 경기장은 제외한다.

바. (현행과 같음)

2.·3. (현행과 같음)

4. 별표 3의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 감액
가. 관내 초·중·고 학교운동부 경기 및 훈련

나. 시장이 지정한 스포츠데이 관련 경기·행사. 다만,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의 경기장은 제외한다.

5. -----

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

<신설>

가. ~ 라. (개정안과 같음)

마. 시장이 스포츠 데이로 지정한 날의 시립체육시설 이용자: 100분의 30 감액. 다만,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이 있는 경기장은 제외한다.

바. (개정안과 같음)

2.·3. (개정안과 같음)

4. 관내 초·중·고 학교운동부 경기 및 훈련의 경우 별표 3의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 감액

5. -----

가. ~ 바. (개정안과 같음)

사. 시장이 지정한 스포츠데이 관련

사. (생략)

사. (현행과 같음)

경기·행사. 다만,
시를 연고로 하는
프로구단이 있는
경기장은 제외
한다.

아. (개정안 사목과
같음)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은 「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」 제2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데이의 안전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, 시설별 안전관리·운영요원 배치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제9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. 시장이 스포츠데일로 지정한 날의 시립체육시설 이용자: 100분의 30 감액.
다만,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이 있는 경기장은 제외한다.

제10조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마. 시장이 스포츠데일로 지정한 날의 시립체육시설 이용자: 100분의 30 감액. 다만,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이 있는 경기장은 제외한다.

제10조제5호사목을 아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사. 시장이 지정한 스포츠데이 관련 경기·행사. 다만,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이 있는 경기장은 제외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제3항제3호, 제10조제1호
마목 및 제10조제4호의 각 규정은 목동실내빙상장에 대하여는 2026년 1월
1일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의2(체육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 등) ①·②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4조의2(체육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시장은 「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」 제2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데이의 안전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, 시설별 안전관리·운영요원 배치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</p>
<p>제9조(입장료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장료를 감액할 수 있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9조(입장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시장이 스포츠데일로 지정한 날의 시립체육시설 이용자: 100분의 30 감액. 다만,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 구단이 있는 경기장은 제외한다.</u></p>
<p>4. 5. (생략)</p> <p>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시장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별표 2 제1호의 개인연습사용료 감면.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</p>	<p>4.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.</p>

하나만을 적용한다.

가. ~ 라. (생략)

<신설>

바. (생략)

2. ~ 4. (생략)

5. 별표 3의 전용사용료의 100분의
30 감액

가. ~ 바. (생략)

<신설>

사. (생략)

-----.

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
마. 시장이 스포츠데이로 지정한
날의 시립체육시설 이용자:
100분의 30 감액. 다만, 시를
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이 있는
경기장은 제외한다.

바. (현행과 같음)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-----

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

사. 시장이 지정한 스포츠데이
관련 경기·행사. 다만, 시를
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이 있는
경기장은 제외한다.

아. (현행 사목과 같음)